

『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2월 2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3월 11일

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아동보육과장 황 은 채

나. 제안이유

-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미시 가족 행복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친화도시 구성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의 위치 및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3조)
-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7조)
 - 이용시간, 이용자, 이용제한, 변상 및 원상회복 등
-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의 위·수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 -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등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경 자

○ 본 『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은

-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의 개관이 2019년 상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- 시설의 소재지를 명시하고 추진사업과 이용기준을 명확히 하며,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가족친화적 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합 가족지원센터로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-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